

IT인프라(서버) 보안 취약점 진단 신청서

귀사의 보안위협 도출 및 침해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IT인프라(서버) 보안 취약점 진단은 다음의 법률([개인정보보호법] 제3조(개인정보보호 원칙), [중소기업기술보호법] 제32조(비밀유지 의무), [정보통신망법] 제48조(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)을 준수하면서 수행됩니다.

기업명	담당자	담당자 연락처	진단 대상	진단 개수
			※ Linux 서버 버전 정보 Ex) CentOS 7.3	※ 최대 3대 신청 가능

※ 유의사항

- IT인프라(서버) 보안 취약점 진단은 수혜기업 서버의 보안상 취약하게 설정한 부분을 식별하는 목적으로, 진단을 통해 식별한 취약점을 지킴센터에서 직접 조치해 드리지 않습니다.
- IT인프라(서버) 보안 취약점 진단 시 모집 안내문의 "사전 준비 사항(필수)"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, 진단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- IT인프라(서버) 보안 취약점 진단 시 서버의 Root 계정 제공이 필요하며, Root 계정 제공이 어려우신 경우 진단이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- 보안 취약점 진단을 수행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 및 오류 등에 대해 **지킴센터는 책임이 없으며** 이에 대비하여 취약점 진단 전 **중요 데이터를 사전에 백업** 바랍니다.

본인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 및 이해하였으며,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.

2025년 월 일

기업명 :

성명 :

(서명 또는 인)

동의

미동의